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89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안철수 · 박형수 · 김형동
서천호 · 김선교 · 송석준
박충권 · 최은석 · 김상훈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조세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사용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외에 별도의 조세지원이 이뤄지지 않

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9(중소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제도”라 한다)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담하는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30조의4”를 “제29조의9, 제30조의4”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9조의7, 제29조의8”을 “제29조의7부터 제29조의9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의7, 제29조의8”을 “제29조의7

부터 제29조의9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 부담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9조의9(중소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제도”라 한다)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담하는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u> <u>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u>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9조의9, 제30조의4 -----

-----.

③ ~ ⑥ (현행과 같음)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를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